

보도자료



2019년 7월 11일(목) 배포

2019년 7월 12일(금)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· 인터넷 매체는 7월 11일(목) 낮 12시

공정 거래 위원회 2019년 7월 12일(금) 조간부터 보도가능 담당과장: 이태휘(044-200-4450)

담당: 구용민 사무관(044-200-4457)

일방적으로 손해 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기맹점주에게 부괴하거나 괴도한 대출금 빈환 책임을 금융증개인에게 부괴한 약관은 불공정

-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불공정 약관 시정 -

■ 공정거래위원회(이하 공정위)는 **씨제이푸드빌 가맹 계약서**와 **롯데오토리스 대출 업무 위탁 계약서**를 심사하여 가맹점주와 금융 중개인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.

<불공정 약관 시정 내용>

- o (CJ푸드빌) 일방적으로 손해 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기맹점주에게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함.
- (롯데오토리스) 과도한 대출금 반환 책임을 금융중개인에게 부과한 조항을
 고의 · 과실 책임이 있는 경우에 부담하도록 수정함.
-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및 할부금융업자와 금융중개인이 체결하는 약관의 불공정한 조항을 시청하여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.

1 시정 배경

□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(가맹점, 대리점 등)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된 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자영업자들의 민원이 발생했다.

- 1 -

- □ 공정위는 씨제이 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가 각각 가맹점과 금융 중개인과 체결한 약관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어 시정하도록 했다.
- 씨제이 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는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.

2 시정 내용

- 1. 일방적으로 손해 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가맹점주에게 부과하는 조항 (CJ푸드빌)
- □ (시정 전) 가맹점주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이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도록 했다.
- □ (불공정 사유)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곤란할 것을 대비하여 손해 배상액을 미리 정하게 된다.(민법 398조 제1항)
- 해당 약관 조항은 가맹점주의 부당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액 예정 조항만
 있고, 가맹본부의 부당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액 예정 조항이 없다.
-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부당 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없이
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,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부당 행위로
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함을 의미한다.
- 따라서 가맹본부가 손해 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수월하게 손해 배상을
 받게 되고, 가맹점주는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어
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므로 무효이다.
- □ (시정 후) 손해 배상액 예정 조항을 삭제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부당 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손해 배상을 청구하도록 했다.

수정 전 약관 조항	수정 후 약관 조항
(손해배상액 예정) 가맹점주가 제19조 제7 항(부당이득의 취득금지)을 위반할 경우 가맹점주는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액에 2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지불 하여야 한다.	삭제

2. 과도한 대출금 반환 책임을 금융 중개인에게 부과한 조행롯데 오토리스

- □ (시정 전) 대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금융증개인의 귀책 여부와 관계 없이 대출 원리금 및 기타 비용의 반환 책임을 부과하고, 지연 이자 연 29%를 부과했다.
- □ (불공정 사유) 대출 계약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손해를 유발한 주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.
- ㅇ 해당 약관 조항은 대출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금융중개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, 지연 이자율도 '이자제한법' 등에 따른 최고 이자율(24%)을 초과하고 있다.
- ㅇ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떠넘기는 조항 으로 무효이다.(약관법 제7조 제2호)
- □ (시정 후) 금융중개인의 고의·과실이 있을 경우 대출금 반환 책임을 부담토록 했으며, 지연 이자율도 연 18%로 변경했다.

수정 전 약관 조항 '금융중개인'이 알선한 대출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, '금융중개 인'은 '사업자'의 청구 즉시 해당 대출신청 인에 대한 대축원리금 지역이자 기타 발생 비용을 '사업자'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, 이행 지체시에는 '사업자'의 반환청구일 다 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 반환청구금액에 대 하여 <u>연 29%의 지연이자</u>를 가산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.

'금융중개인'이 알선한 대출이 **'금융중개인**' 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__ , '금융중개인'은 '사업자'의 청구 즉시 해당 대출신청인에 대 한 대출원리금, 지연이자, 기타 발생비용을 '사업자'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, 이행 지체시에는 '사업자'의 반환청구일 다음날로 부터 반환일까지 반환청구금액에 대하여 연 18%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
수정 후 약관 조항

- 3 -

- 자필서명, 인감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'대 출신청인' 및 연대보증인의 대출채무, 보증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인된 경우
- 2. '대출신청인'이 현금융통을 목적으로 물품 (차량)을 구입하여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할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 지 못하여 대출을 알선한 경우
- 3. 물품판매 없이 또는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3. 물품판매 없이 또는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대출신청을 하거나 물품판매 후 목적물을 회수하는 등 허위로 대출 신청을 한 경우
- 4. 동일한 물품을 대상으로 당사 또는 타 금 융기관에 각각 분할하거나 중복하여 대출 을 알선한 경우
- 5. 타인의 명의로 대출을 알선하거나 타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출이 신청된 경우

- 1. '대출신청인' 및 연대보증인의 본인확인, 1. '대출신청인' 및 연대보증인의 본인확인, 자필서명, 인감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'대 출신청인' 및 연대보증인의 대출채무, 보증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인된 경우
 - 2. '대출신청인'이 현금융통을 목적으로 물품 (차량)을 구입하여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할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 지 못하여 대출을 알선한 경우
 - 대출신청을 하거나 물품판매 후 목적물을 회수하는 등 허위로 대출 신청을 한 경우
 - 4. 동일한 물품을 대상으로 당사 또는 타 규 융기관에 각각 분할하거나 중복하여 대출 을 알선한 경우
 - 5. 타인의 명의로 대출을 알선하거나 타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출이 신청된 경우

3 기대 효과·계획

- □ 대기업 계열 가맹본부와 할부금융사가 불공정 약관을 자발적으로 시정하여, 가맹점주 및 금융중개인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 된다.
- □ 공정위는 자영업자와 체결하는 약관을 점검·시정하여 갑과 을 간 상생 협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.



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www.ftc.go.kr

